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도심항공교통사업에 관한 규제특례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국토관리청에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매수·관리에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7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에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지하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9명(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6명(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및 철도경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87명”을 “8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명(5급 2명)”을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12”를 “1,0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01”을 “1,0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72”를 “97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547”을 “2,538”로 하고, 일반직 계 “2,547”을 “2,53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538”을 “2,52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국

토관리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차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7조제1항 관련)

1. 국토교통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철도국 1개 과	3명
2)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4명
3) 모빌리티자동차국 1개 과	2명

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명
2)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	18명
3) 철도경찰(철도특별사법경찰대)	6명
4) 지하안전관리(지방국토관리청)	2명
5) 건설현장 안전점검(지방국토관리청)	1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87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u>88명</u> ----- ----- ----- ----- ----- ----- ----- -----.
③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2명(5급 2명)</u> 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 ----- <u>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u>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12</u>	<u>1,013</u>	+1
·	·	·	
·	·	·	
일반직 계	<u>1,001</u>	<u>1,002</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72</u>	<u>973</u>	+1
·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47</u>	<u>2,538</u>	-9
일반직 계	<u>2,547</u>	<u>2,538</u>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38</u>	<u>2,529</u>	-9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